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옥주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호 3615

발의연월일: 2020. 9. 8.

발 의 자: 송옥주・양정숙・김영주

안호영 · 오영환 · 송재호

임종성 • 야전(비) • 이상직

윤미향 • 박성준 • 김민철

전혜숙 • 박상혁 • 노웅래

정필모 · 김종민 의원

(17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환경부장관으로 하여금 배출시설 설치·운영 사업자가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거나 배출시설을 적정하게 운영하지 않는경우 등에 조업정지 등을 명할 수 있도록 하면서 그 조업정지가 국민경제나 공익에 현저한 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면 조업정지처분을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한편, 현행 과징금 최고액의 상한은 2억원으로, 중대한 위반행위에 비해 과징금 부과 수준이 낮아 사업장의 부적정 배출행위 재발을 막고 과징금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에는 한계가 있음.

이에 환경부 소관 법률 중 「물환경보전법」, 「폐기물관리법」 등에서는 사업체의 매출규모에 상응하는 수준으로 영업정치 처분에 갈

음하는 과징금 부과제도를 지난해에 개선한바 있음('19.11.26 개정).

이에 조업정지 또는 영업정지 처분에 갈음한 과징금 금액을 매출액기준으로 부과하여 위반행위에 대한 적절한 수준의 금전제재가 부과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7조).

법률 제 호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기환경보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억원 이하의"를 "매출액에 100분의 5를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환경부령으로 정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되, 그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가중(加重)하거나 감경(減輕)할 수 있다"로 한다.

다만, 매출액이 없거나 매출액의 산정이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2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징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조 업정지처분을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때에는 제37조의 개정규정에 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7조(과징금 처분) ① 환경부장	제37조(과징금 처분) ①
관 또는 시·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배	
출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	
자에 대하여 제36조에 따라 조	
업정지를 명하여야 하는 경우로	
서 그 조업정지가 주민의 생활,	
대외적인 신용・고용・물가 등	
국민경제, 그 밖에 공익에 현저	
한 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	
정되는 경우 등 그 밖에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조업정	
지처분을 갈음하여 <u>2억원 이하</u>	<u>매출액에 10</u>
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0분의 5를 곱한 금액을 초과하
<u><단서 신설></u>	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다만, 매출액이 없거나 매출액
	의 산정이 곤란한 경우로서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2
	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1. ~ 7. (생 략)	1. ~ 7. (현행과 같음)
③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	3
하는 위반행위의 종류ㆍ정도 등	

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u>환경부령으로</u> 정한다.

④ ~ ⑥ (생 략)

---- <u>대통령령으</u>

<u>로 정하되, 그 금액의 2분의 1의</u> 범위에서 가중(加重)하거나 감

경(減輕)할 수 있다.

④ ~ ⑥ (현행과 같음)